

이용계약 및 서비스 진행 등에 관한 세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장기요양센터의 이용계약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명한다.

제2조 (대상) 본 장기요양센터의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센터에 대한 부분으로 한다.

제3조 (주요내용)

1. 이용자 모집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1-5등급을 받은 자로 모집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 ① 입소 희망자 및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 방법
- ② 대중언론매체(복지관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방법
- ③ 지역 내 타 유관기관(동사무소,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등)의 의뢰 및 신청에 의한 방법
- ④ 복지관 내 타부서의 서비스 연계에 의한 방법
- ⑤ 기관소식지 및 홍보물 배부에 의한 방법

2.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항 목	세부사항
계약기간 및 목적	1. 본 센터와 방문목욕서비스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 중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거나 급여 수가가 변경등 장기요양인정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3. 계약의 목적은 센터와 방문목욕서비스 급여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규명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월이용료	1.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변동되는 경우 그 시안에 따른다. 2.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3. 저소득층 : 본인부담금 감면
기타 비용부담액	1. 방문목욕에 소요되는 비누, 수건, 샴푸, 차량유지비 등 기타 부대 비용은 센터 수익금에서 부담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은 본 목욕서비스에 대한 절차, 계약, 변경등에 대한 고지를 받고,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2. 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서비스제공기록 등의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3. 신원인수인은 본 이용계약에 따른 계약 내용과 급여제공범위 등의 준수의 의무를 가지고 있다.

	4.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은 본인부담금 부담,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장기요양보험 수급관련 정보 변경사항에 대해 통보할 의무가 있다.
계약의 해제	계약해지의 통보는 서면통지를 원칙으로 한다. 1.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서비스 이용자의 사망 3.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포기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 4. 허위로 부당하게 판정받은 경우 5. 시설에 입소를 한 경우 6. 요양보호사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등 부당한 행위가 있는 경우 7. 기타 서비스가 계속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지는 경우(사례회의를 통해서 정함)

3.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

- ① 변경사유가 발생 시 목욕서비스 실시 1개월 전에 유선연락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 발행된 변경통보서 사본 제출
- ② 이용료 및 서비스의 횟수 변경사유에 대한 사전소통
- ③ 서비스 이용자의 표준이용계획서 수정과 변경내용에 따른 재계약
- ④ 국민기초수급권자의 경우 이용료 등 비용 변경시 변경내용에 대해 구청 승인 후 변경할 수 있다.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목욕서비스는 아래와 같은 절차대로 진행되며 본인부담금 지불 역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된다.

- ①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이 완비된 특수이동목욕차량 또는 이동식 욕조를 활용하여 목욕 서비스 제공
- ② 목욕서비스 실시 전·후 건강체크 실시
- ③ 목욕서비스 실시
- ④ 서비스 비용 부담은 이용자 계약에 관한 사항에 따르며 본인부담금은 현금 및 계좌입금으로 서비스 제공 현장에서 부담한다.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등에 관한 사항

항 목	세부사항
상해비용	1. 배상책임 - 서비스제공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대상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은 센터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서비스제공자가 배상책임을 이행하게 된 경우, 신속히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 기타 자연발생에 의한 사고는 센터에서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 근거하여 센터와 서비스 제공자의 협력을 통해 책임을 이행한다. 2. 면책범위 - 이용자의 부정·사기·악의·불법행위에 의한 사고, 부상 등에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부과하지 않는다.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특별 보호가 필요한 도뇨, 센터지 절개, 욕창, 혈액투석 환자는 입욕 시 사전 점검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입욕 전·후 혈압, 당뇨 등 건강체크 실시 2. 피부병 및 전염병은 입욕금지 3. 고혈압환자입욕 - 입욕시 상체를 높이고 더운 물 사용자제 4. 병원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 간호사 및 병원연결 5. 차량 내 비상약 및 구급함 상시 배치

6.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항 목	세부사항
이동목욕 차량	1. 대상자 가정 방문시 주차위치 및 물리적인 상황점검 2. 목욕실시 전·후 리프트 운행 시 요양보호사 및 자원봉사자 함께 탑승 3. 목욕 차 전기시설 및 욕조 사용법의 숙지 및 차량 내에 안내문 부착 4.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하여 차의 관로나 물탱크 내에 있는 모든 물 배수 5. 차의 방전을 막기 위하여 자체 전원(배터리)보다 외부 전원의 사용 권장 6. 목욕이 끝날 때 마다 욕조와 관련 장비를 소독하고, 하루 일정이 끝나면 차량 내부 청소 실시
이동욕조	1. 욕조 이동시 두 명 이상의 인력을 활용하고 장애물 주의 2. 항시 욕조 누수 확인 및 신속한 처리 3. 겨울철 동파 방지를 위하여 욕조 내 호스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하고 모터나 배수 호스 및 샤워기의 관리 철저(실내 보관 권장) 4. 목욕이 끝날 때 마다 욕조 소독 및 청소 실시

제4조 (기타사항) 위 항목에서 규명하지 않은 사항들은 일반적인 관례와 규칙에 따라 시설장이 결정한다.